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12. . (제 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국방우주정책 및 전자기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국방인공지능 발전, 첨단무인전력체계 확대 및 획득제도 개선 등 국방첨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며,

국방부 과장급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서 군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과장급 인력 1명(4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군무원 채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을 2명(6급 1명, 7급 1명)으로 정규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국방부 국방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획조정실장과 국방정책실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추가하고, 현행 법령 속 일부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36호를 삭제하고, 제12조제3항에 제39호 및 제4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분석·대책 수립 및 발전

40.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책 수립 및 발전

제13조제3항제3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49명”을 “48명”으로 하며,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75”를 “74”로 하고, 일반직 계 “75”를 “7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3”을 “72”로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 정원 6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 등 소속기관 정원 1명(5급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2의2]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7조의2제1항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사복지실 1개 과	4명	2023년 9월 30일까지

[별표4]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한시정원표(제30조 관련)

1. 제30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준속기한: 2025년 6월 3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2. 제30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준속기한: 2024년 3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 35. (생략) 36.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분 석·대책 수립 및 발전 37. ~ 41. (생략)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5. (현행과 같음) <삭제> 37. ~ 41. (현행과 같음)
제12조(국방정책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8. (생략) <신설> <신설>	제12조(국방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8. (현행과 같음) 39.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분 석·대책 수립 및 발전 40.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책 수립 및 발전
제13조(인사복지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0. (생략) 31. 군 전염병 예방과 혈액수급 에 관한 사항 32.·33. (생략)	제13조(인사복지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30. (현행과 같음) 31. - 감염병 ----- ----- 32.·33. (현행과 같음)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30조(한시정원) ① (생략)

②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 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③ (생략)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5</u>	<u>74</u>	-1
일반직 계	<u>75</u>	<u>74</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3</u>	<u>73</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23